

#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번호	제191호
의결년월일	2003.10.15 (제107회)

제안년월일 : 2003년 10월 13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□ 제안이유

- 제출 또는 발의되는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고 그 의안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안의 상정시기를 규정하고,
-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 명문화,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 근거 마련,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의무화 등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의원등록 시기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하고, 등록처는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함.(안 제2조)
-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최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- 의안 상정 시기를 회기 개시 4일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된 때로 하되,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.(안 제20조의5)
- 시정질문을 명문화하고,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대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며, 보충질문의 일문일답 근거를 마련하고, 답변시간 24시간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함.(안 제66조의 2)

##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”를 “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”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개회식을 행한다”를 “개회식을 행하며,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5(의안의 상정시기) ①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개시 4일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 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6조의 제목 “(시장출석 요구)”를 “(시장 등의 출석요구)”로 하고,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2(시정질문·답변) ①본회의는 회기중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(이하 “시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, 소관 업무의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의장은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질문의원에 한하여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.

④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,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가 의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등록)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 이라 한다.)은 <u>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</u>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등록) -----  ----- <u>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</u> <u>증서를 의회사무국에</u> ----- .</p>
<p>제4조(개회식)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. 다만,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<u>개회식을</u> <u>행한다.</u></p>	<p>제4조(개회식) -----  -----  -----<u>개회식을</u> <u>행하며,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0조의5(의안의 상정시기) ①위원회는 발의 <u>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개시 4일전까지</u> <u>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</u> <u>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.</u>  <u>다만,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</u> <u>재회부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<u>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</u> <u>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6조(시장출석 요구) ①~③(생략)</p> <p>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66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제〉</p> <p>제66조의2(시정질문·답변) ①본회의는 회기중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(이하 “시정질문”이라 한다.)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, 소관업무의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의장은 의원의 시정 질문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은후 필요한 경우 질문의원에 한하여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허가 할 수 있다.</p> <p>④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,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 시간 24시간전까지 의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